구 매 사 양 서
COMMODITY DESCRIPTION

정부물품 분류번호	관세분류번호 HSK No.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4110]실험기기	8414801000 외	연구실 기기/비품	SET	1

Ⅰ. 특징(Features)

1. 용도

1) 연구실 내 실험 공간의 효율적 구성: 벽면 실험대, 중앙 실험대, 싱크 테이블 및 수납 설비를 설치하여 실험기기 배치, 시료 전처리, 세척 및 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함
2) 화학물질 취급에 적합한 내구성 및 내화학성 확보: 실험대 및 작업 공간에는 화학물질 취급 환경에 적합한 내화학성·내수성 소재를 적용하여, 반복적인 실험과 시약 사용에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시약의 안전한 보관: 인체에 유해한 시약 보관용 안전캐비닛을 설치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누출 등에 따른 사고 위험을 저감함
4) 연구실 안전성 및 업무 편의성 향상: 실험대별 전원 공급, 하부 서랍장, 수납장, 실험용 의자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함께 구축하여 연구자의 작업 편의성과 실험실 운영 효율성을 향상함

Ⅱ.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구성

1) 시약대형 중앙실험대	2 set
2) 콘센트형 벽면실험대	5 set
3) 이동서랍장	5 set
4) 싱크 테이블	2 set
5) 등받이·팔걸이형 실험실 의자	3 set
6) 원형 실험실 의자	12 set
7) 안전 시약장	1 set
8) 목재 시약장	4 set
9) 시약대형 벽면실험대	2 set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s)

1. 구성

1) 시약대형 중앙실험대 2 set
- 외형 크기: 3,000(W) × 1,500(D) × 800/2,000(H) mm 내외
- 내약품성 페놀 라미네이트 상판(20T 이상) 적용
- 2단 시약대 2조, 낙하방지 가드 및 선반 포함
- 220 V 방우형 콘센트 포함
- 4단형 목재 이동서랍장 4개 포함

2) 콘센트형 벽면실험대 5 set
- 외형 크기: 1,800(W) × 750(D) × 800/900(H) mm 내외
- 내약품성 페놀 라미네이트 상판(20T 이상) 적용
- 220 V 돌출형 콘센트 포함

3) 이동서랍장 5 set
- 외형 크기: 450(W) × 530(D) × 705(H) mm 내외
- 4단형 이동식 서랍 구조
- 파티클보드 18T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갖춘 재질 적용

4) 싱크테이블 2 set
- 외형 크기: 1,500(W) × 750(D) × 800/1,100(H) mm 내외
- 내약품성 페놀 라미네이트 상판(20T 이상) 및 분체도장 스틸 프레임 적용
- 폴리프로필렌(PP) 재질 싱크볼 포함
- 싱크볼 크기: 720(W) × 380(D) × 290(H) mm 이상
- 후면 및 측면 물튐방지판(폴리카보네이트 5T 이상) 포함
- 3구 수전 및 원터치 수전 포함

5) 등받이・팔걸이형 실험실 의자 3 set
- 외형 크기: 630(W) × 540(D) × 810/870(H) mm 내외
- 등받이 및 팔걸이 포함

6) 원형 실험실 의자 12 set
- 외형 크기: Ø370 × 540/760(H) mm 내외
- 원형 의자

7) 안전 시약장 1 set
- 외형 크기: 1,092(W) × 457(D) × 1,651(H) mm 내외
-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보관이 가능한 안전시약장
- 자동닫힘(Self-closing) 방식 방식의 2도어 구조 및 내부 선반 2개 이상 포함

8) 목재 시약장 4 set

- 외형 크기: 1,200(W) × 450(D) × 1,855(H) mm 내외
- 상·하부 여닫이 유리문 수납장 구조
- 각 수납부 시건장치 및 3도어 구조 포함
- 파티클보드 15T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갖춘 재질 적용

9) 시약대형 벽면실험대 2 set

- 외형 크기: 1,500(W) × 750(D) × 800/2,000(H) mm 내외
- 내약품성 페놀 라미네이트 상판(20T 이상) 적용
- 2단 시약대, 선반 및 낙하방지 가드 포함
- 220 V 방우형 콘센트 포함
- 목재 이동서랍장 1개 포함

Ⅳ. 납품 및 하자보증

1. 납품

1.1 납품기간 : 납품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하며, 설치 및 배치 후 시운전 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완료일로 한다.

1.2 납품장소 :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기기 및 비품을 설치한다.

1.3 인도조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반입하고, 조립, 설치, 배치, 수평 조정 및 현장 정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하자보증

2.1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설치/부품비와 인건비를 포함한다.

2.2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3 하자보증 기간 중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함은 공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수리되어야 하며, 치명적인 결함 및 반복적인 고장으로 인해 기기 및 비품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4 하자보증기간 이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공급자는 결함 발생 시 사용자의 요청을 접수한 이후 공급자와 협의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타

3.1 납품 건은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최신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 정품 및 최신 물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3.3 납품 전 현장 실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배치 및 설치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3.4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의 검수에 합격한 시점을 납품 완료일로 본다.

3.5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품 (예-부속품, 소모성 자재, 운송비, 반입비, 조립비 및 설치비)은 계약금액에 포함해야 한다.

3.6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7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를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Ⅴ. 검수

1. 납품 후 시운전 검수

공급자는 다음 측정 항목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여 검수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1.1.1 검수 항목은 규정된 물품의 구성 여부, 동작상태 점검 및 규격서에 명시된 개별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1.1.2 성능의 평가 및 검증은 납품자가 제시한 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성능 검증이 어려운 항목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인시험기관에서 성적서 발급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출하성적서로 대체한다.

1.1.3 검수과정에서 물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단, 납품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면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